

변 경 대 비 표

■ 펀드명 : 하나파워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혼합]

■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6 년 07 월 16 일

■ 변경사유

- 환매수수료 삭제

■ 신탁계약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7 조(환매가 격 및 환매방법)	환매수수료 삭제	①~② <생략> ③판매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 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	①~② <좌동> ③판매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삭제>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 자에게 지급한다.
제 41 조(환매수 수료)	환매수수료 삭제	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 사(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 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 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 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 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 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 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 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 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“이익금” 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 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	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.

제 43 조(신탁계약의 변경)	환매수수료 삭제	①~③ <생략>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①~③ <좌동>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<삭제>다. <삭제>
제 45 조(집합투자기관의 해지)	환매수수료 삭제	①~② <생략> ③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④~⑤ <생략>	①~② <좌동> ③<삭제> ④~⑤ <좌동>
부칙		<추가>	<u>부 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6 년 07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.

■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환매수수료	환매수수료 삭제	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	없음

■ 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요약정보			

환매수수료	환매수수료 삭제	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	없음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1. 매입,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나. 환매	환매수수료 삭제	3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<변경 전 1>	3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<변경 후 1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환매수수료 삭제	환매수수료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<변경 전 1>

구분	중도환매허용	중도환매불가	중도환매시 비용발생
환매가능여부			○
환매수수료	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,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. - 90일미만 : 이익금의 70%		

※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**환매수수료** 및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.

<변경 후 1>

구분	중도환매허용	중도환매불가	중도환매시 비용발생
환매가능여부	○		
환매수수료	없음		

※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<삭제>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.